

##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 및 세율)

### 1. 금융투자소득세의 계산방식

-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융투자손익 통산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것 (단, 2025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소득 유형에 따라 그룹별로 5,000만원과 250만원 한도로 공제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b>20%</b> 이며,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b>25%</b> (지방소득세 별도*)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반영하기 전의 총 세액
-	감면세액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차감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가산세를 반영하기 전의 총 세액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경우 가산
=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최종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총 세액
-	기납부세액	금융회사로부터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
=	금융투자소득세 납부세액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27.5%

## 2.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계산

### 가. 소득금액 산출

$$\text{소득금액} = \text{양도가액} - \text{필요경비}$$

### 나. 양도가액

구분	양도가액
주식	실제 양도가액
채권	실제 양도가액 [Clean Price]
투자계약증권	실제 양도가액

### 다.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양도비등 기타필요경비]

#### 1) 일반적인 취득가액\*

구분	취득가액
주식	실제 취득가액
채권	실제 취득가액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등상당액 제외) [Clean Price]
투자계약증권	실제 취득가액

\*매입부대비용 포함

#### 2) 무상주, 신주 발생 시 거래유형별 배당소득 및 금투소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구분	취득가액
무상증자, 주식배당	보유주식이 증가하므로 의제배당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무상증자>
	▶ 배당소득 과표 : 배정주식수(단수주 포함) × 주당 액면가 × 과세비율
	▶ 무상주식 취득가액 : 배정주식수(단수주 제외) × 주당 액면가 × 과세비율
<주식배당>	
▶ 배당소득 과표 : 배정주식수(단수주 포함) × 주당 발행금액	
▶ 주식배당분 취득가액 : 배정주식수(단수주 제외) × 주당 발행금액	

\*금융투자소득세 가이드라인 참고

2) 무상주, 신주 발생 시 거래유형별 배당소득 및 금투소득 취득가액 산정방법(계속)

구분	취득가액
현물배당	▶배당소득 과표 : 배정주식수(단수주 포함) × 주당 시가(배당결의일 종가) ▶현물배당분 취득가액 : 배정주식수(단수주 제외) × 주당 시가(배당결의일 종가)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포함
무상감자, 액면병합	수량 변동만 발생하므로 배당소득 없음, 단 단수주대금은 금투소득으로 과세
유상감자	▶배당소득 과표 : 유상감자 대가 -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 ▶감자 후 잔존주식 취득가액 : 감자 전 주식 취득가액 -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
합병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 B법인 주주가 A법인 주식 수취한 경우의 주식 취득가액 및 의제배당소득 ※단수주대금은 지급 시에 금투소득으로 처리  <적격합병>* 1) 합병교부금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 과표 : 없음  2)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과표 : $\text{Min}[B\text{주식의 취득가액}, (A\text{주식의 시가}^{**} \times A\text{주식 배정수량})] + \text{합병교부금} - B\text{주식 취득가액}$  <비적격합병> ▶배당소득 과표 : $(A\text{주식 시가} \times A\text{주식 배정수량} + \text{합병교부금}) - B\text{주식 취득가액}$  <주식 취득가액> ▶주식 취득가액 : $B\text{주식 취득가액} + \text{배당소득 과표} - \text{합병교부금}$
분할	A법인이 A' 존속법인과 B신설법인으로 분할 -> 기존 A법인 주주가 분할대가로 B법인 주식을 취득 시 배당소득과 B주식의 취득가액  ※분할 후 A'주식 취득가액 : $\text{기존 A주식 취득가액} \times \text{존속 분할비율}$ ※단수주대금은 지급 시에 금투소득으로 처리  <적격분할> 1) 분할교부금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 과표 : 없음

\* 법인세법 §44, §46의 적격·비적격 판단 여부는 실무상 주식발행회사의 관련 공문으로 판단 가능

\*\* 시가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등기일로 평가 (소령 §46(5))

## 2) 무상주, 신주 발생 시 거래유형별 배당소득 및 금투소득 취득가액 산정방법

구분	취득가액
분할 (계속)	<적격분할> 2) 분할교부금이 있는 경우 ▶ 배당소득 과표 : $\text{Min}[(\text{기존 A주식의 취득가액} \times \text{신설 분할비율}), (\text{B주식의 시가} \times \text{B주식 배정수량})] + \text{분할교부금} - (\text{기존 A주식의 취득가액} \times \text{신설 분할비율})$
	<비적격분할> ▶ 배당소득 과표 : $\text{B주식의 시가} \times \text{B주식 배정수량} + \text{교부금} - (\text{기존 A주식 취득가액} \times \text{신설 분할비율})$
	<주식 취득가액> ▶ B주식 취득가액 : $\text{기존 A주식 취득가액} \times \text{신설 분할비율} + \text{배당소득 과표} - \text{분할 교부금}$
포괄적 교환·이전	<조특법 §38[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이전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 교환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금투소득 이연효과), 단수주대금은 금투소득으로 처리
	<조특법 §38 적용 불가> 교환·이전 받은 교환대가(증권거래세 과표)를 양도가액으로 금투소득 발생
※과세이연 여부는 실무상 주식발행회사의 관련공문에 따라 판단	

## 3)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

필요경비	①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②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③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주식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투자일임수수료 등)

#### 4) 필요경비 계산특례 등\*

구분	내용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양도 시	1. 대상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2. 필요경비 Min[배우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증여세,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등]
가업상속공제 적용된 주식등	-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 1 + 2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의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준용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고가매입·저가양도 등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단,   시가 - 거래가액   ≥ (3억원 or 시가의 5%)인 경우에만 적용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시. 단,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 Max[증여세+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직접 양도 경우로 본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87조의13, 제87조의27, 제101조

#### 5) 의제 취득가액 (2024.12.31. 이전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특례)

- 2024.12.31.까지 발생한 평가이익의 비과세 효과 유지 목적

구분	의제취득가액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의 1)장내 매도 2)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양도	Max[실제 취득가액**, 2024년 12월 3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K-OTC 매도	Max[실제 취득가액, 2024년 12월 31일의 금융투자협회 공표 최종시세가액]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2025.1.1.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액주주 여부를 판정 (예: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6월말인 법인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 매년 9월말인 법인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30일, 매년 12월말인 법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

\*\* 매입부대비용등을 포함 [소령 §150의13①]

### 3.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 가. 소득금액 계산

<b>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b>	$A \times B - C$ A : 좌당양도소득금액 B :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 · 주수 C :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 ·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특세등  ※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예외적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 배분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면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
--------------------------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해산 [소법 §87의6]

#### 나. 좌당양도소득금액 산출

구분		좌당양도소득금액
1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환매등 발생 시점의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 직후(없었으면 매수 시)의 기준가격
	상장된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2호 : 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발생 시점의 기준가격 - 매수 시(매수 후 직전 결산 · 분배 있었으면 그 직후)의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 시 미과세된 투자자별 손익
1호 증권과 2호 중 상장된 증권을 증권시장 (해외 포함)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의제 기준가격 적용

\*\* 의제 실제매수가격 적용

다. '24.12.31. 이전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실제매수가격의 의제가격  
(해외증권시장 상장된 것은 제외)[소령 §150의18]

1) 의제 기준가격

1호	ETF(주가지수 추종형) 및 상장된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text{직전 결산} \cdot \text{분배 직후(없었으면 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p>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가격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결산·분배 직후(없었으면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p>
	ETF(주가지수 추종형 제외)	$\text{직전 결산} \cdot \text{분배 직후(없었으면 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pm D)$ <p>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가격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D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p>
2호 집합투자증권		$\text{매수 시(매수 후 결산} \cdot \text{분배가 있었으면 직전 결산} \cdot \text{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B - C \pm D)$ <p>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가격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D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과세손익</p> <p>*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A* : <math>\text{Max}[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매수 시** 기준가격]</math></p>

\* 자본시장법 §279①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과표기준가가 없으면 기준가격

\*\*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결산·분배 직후

2) 의제 매수가격

ETF	<주가지수 추종형> Max[실제 취득가액,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그 외> Max[실제 취득가액, A]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장된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Max[실제 취득가액,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2024.12.31.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필요경비

#### 4.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금액 계산

구분	소득금액
양도등/분배소득금액	$A \times B - C$ A :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분배소득금액 B : 양도등/분배가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C :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	<b>1. 상장지수증권(ETN)</b> 가.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도 :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나. 그 외 거래 : 양도 시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b>2. 주식워런트증권(ELW)</b> 가.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종료로 증권소멸 시 $\text{Max}\{[(A - B) \times C \times D], 0\} - E$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인 행사가격 C: 증권인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환비율 E: 증권인 매수가격 나. 그 외의 경우 : 실제 매도가격(상환가격) - 실제 매수가격
	<b>3.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1,2호 외</b> 실제매도가격(상환가격) - 실제매수가격 ※외화표시증권이면 실제 매수·매도(상환) 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상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 [소령 §150의19②]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2024.12.31. 이전 취득분은 의제 매수가격 적용

※ '24.12.31. 이전 취득한 ETN의 의제 매수가격(해외시장 거래 제외)[소령 §150의20]

상장지수증권 (ETN)	<주가지수 추종형>	$\text{Max}[\text{실제 취득가액}, 2024\text{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그 외>	$\text{Max}[\text{실제 취득가액}, A]$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ETF의 의제 매수가격 산식과 동일



### 5.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

구분	소득금액
장내 선물거래	$(A \times C + B \times C) \times D$ <p>A : 미결제약정수량 증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 소멸거래("반대거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 종료 포함)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종료 포함) -1                      D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거래승수</p>
선도,스왑거래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금전등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옵션거래	1. 반대거래로 계약 소멸 시 $(A \times C + B \times C) \times D$ <p>A : 미결제약정수량 증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 매도계약 시 1, 매수계약 시 -1                      D : 거래승수</p> 2. 권리행사나 최종거래일 종료로 계약 소멸 시 $[ \text{Max} \{ (A - B) \times C, 0 \} - D ] \times E \times F$ <p>A : 최종 거래일 권리행사기준가격                      B : 해당 옵션 행사가격                      C : 옵션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 거래승수                      F : 매수계약 소멸 시 1, 매도계약 소멸 시 -1</p>
차액결제거래 (CFD)	$(A \times C + B \times C) + D - E$ <p>A : 미결제약정수량 증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 매도계약 시 1, 매수계약 시 -1                      D :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차입이자,수수료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비용 중복산입 문제로 아래 '파생상품소득금액 공제비용'에서 제외)</p>

<b>※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매매수수료</li> <li>- 투자중개업자가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li> <li>2) 파생상품 온라인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li> <li>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li> </ul> </li> <li>-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li> </ul>
--------------------------------	--

※파생상품의 손실 제한 :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위탁증거금'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소령 §150의10 및 소칙 §69의6]

## 6. 취득가액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주식등		이동평균법
채권등		개별법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ETF·상장·해외 외상장	이동평균법
	그 외	선입선출법
상장지수증권(ETN) & 주식워런트 증권(ELW)		이동평균법

## 7. 기준시가

구분	기준시가
주식등	<p>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p> <p>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2 제1항의 주식(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기간이 포함된 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p> <p>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p> <p>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p> <p>나. 가목을 적용할 때 제2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 평가</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목1)·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p> <p>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p> <p>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p> <p>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p> <p>4)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p> <p>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p> <p>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 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p>

## 7. 기준시가(계속)

구분	기준시가
<b>주식등 (계속)</b>	<p>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 가액: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p> <p>1) 신주인수권증권: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p> <p>2)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p> <p>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p> <p>나) 가) 외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p>
<b>채권등</b>	<p>「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p>
<b>파생결합 증권</b>	<p>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p> <p>2. 제1호 외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p>
<b>파생상품</b>	<p>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p> <p>2. 제1호 외의 경우: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p>